

예산총칙

2024년도 추경 1 회

제 1 조 2024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| 구 분 | 세입·세출예산총액 | 일시차입한도액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합 계 | 2,373,904,983 | 71,217,149 |
| 일반회계 | 2,195,133,985 | 65,854,020 |
| 특별회계 | 178,770,998 | 5,363,130 |
| 기타특별회계 | 178,770,998 | 5,363,130 |
| 공유재산관리 | 33,857,744 | 1,015,732 |
| 의료급여기금 | 11,544,092 | 346,323 |
|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 | 29,658 | 890 |
| 교통사업 | 41,238,533 | 1,237,156 |
| 철도건설사업 | 57,020,049 | 1,710,601 |
| 폐기물처리시설 | 18,326,601 | 549,798 |
| 도시개발 | 5,016,913 | 150,507 |
| 공공시설등 설치 | 313,739 | 9,412 |
| 문화시설건립 | 919,837 | 27,595 |
| 도시재생 | 8,294,206 | 248,826 |
| 성골지구 도시개발사업 | 2,208,826 | 66,265 |
|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| 800 | 24 |

제 2 조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'세입·세출예산 사업명세서' 와 같다.
단, 각 공기업특별회계는 별책으로 한다.

제 3 조 2024년도 채무부담행위는 별첨 '채무부담행위조서' 와 같다.

제 4 조 2024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'계속비사업조서' 와 같다.

제 5 조 2024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'명시이월사업조서' 와 같다.

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,811,812천원으로 한다.

- (1) 일반예비비 2,811,812천원
- (2) 재해·재난목적예비비 2,000,000천원
- (3) 내부유보금 0천원

제 7 조 2024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109,7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, 지방채상환(원리금 등),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